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12. 1.(화) / 총 3매(본문3)	
국토 교통부	건축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동준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정연수 • ☎ (044) 201-4989, 4991
보 도 일 시		2020년 12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

- 전국 34개 설치·운영 중,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
-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+건축안전 평가지표 신설...21년부터 매년 평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신설된 건축물 안전평가 지표를 토대로 '21년부터 매년 건축물 안전평가를 실시한다. 이를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.

○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·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*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**이다.

* 화재안전규정 적합여부, 구조설계기준 적합여부, 공사현장 설계·시방서 준수 여부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 중심

** 전국 243개 지자체 중 34개 설치·운영 중(광역4, 기초30)

□ 국토교통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확대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'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.

○ 우선, 건축현장 사망자수 등 지역 건축물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'건축안전 관련 평가지표'를 신설*하였고 '21년부터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.

* ①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수준, ② 건축물 안전점검횟수 대비 건설현장·건축물 사망자 수준, ③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추진수준을 평가

- 또한, 센터 전문인력*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전담조직(TF)**과 기준인건비 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'21년 기준인건비 총 99명(광역 4곳, 기초 27곳)을 확보하였으며,

* 센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, 건축(건축사)·구조(기술사·특급기술자)부문 각각 1명 이상 채용하여야 함

** 17개 광역시·도의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자로 구성, '20년 5차례 회의 실시

- 대도시의 경우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 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의무설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

- 그리고, 지자체(전북 무주·장수)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에 적합한 센터 운영 표준 모델을 포함한 '통합운영* 지침(가이드라인)'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.

*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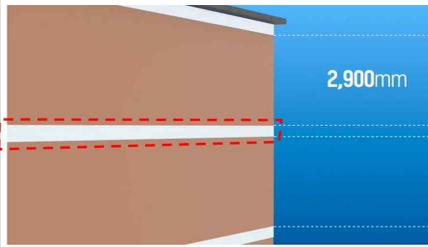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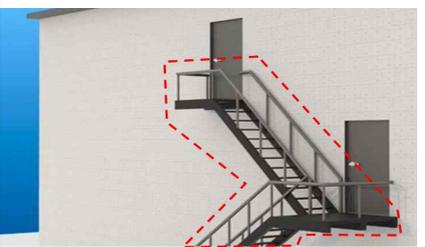
<통합운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>

- ① (표준 운영모델) 지역거점 안전관리체계 역할 수행에 적절한 표준모델 마련
 - 전문인력 수급, 재정수준 등 다양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운영 모델(공동운영, 통합운영)도 마련
- ② (통합운영 지침)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운영, 광역·기초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범위 마련
- ③ (업무매뉴얼) 인허가 도서검토, 현장점검 등 수행 시 검토항목 제시

-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도 「건축물관리법」시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확대 추진과 더불어 지역 특화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.

- 서울특별시는 전체 자치구에 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, 사고 위험이 높은 중·소형 민간건축 공사장의 위험공정(철거, 굴토 등) 관리·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.

-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내 공사현장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월 4일 '세종건축 안전점검의 날'을 지정하고 공사현장 안전·품질 관리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.
- 강원도의 경우 광역시·도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, 지역 건축물의 화재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*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(보강공법 예시1) 스프링클러 설치	(보강공법 예시2) 층별 화재 확산 방지띠 설치	(보강공법 예시3) 옥외 피난계단 설치
		

*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등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제거·보강하는 사업

- '21년에는 '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모범사례'도 선정·공유하여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에 유사 사업 도입 촉진과 신규 사업 발굴의 기반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지역 건축물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와 체계적인 센터 업무 추진이 기대된다”면서,
- “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과 동시에 우수 사례 발굴·홍보, 센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201-49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